

건설기술인 경력신고자료 이관신청서

※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실명확인	처리기간	7일
신청인 인적사항	성명		생년월일	
	전자우편주소	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	
	주소			
현재(변경후) 근무처	회사명		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(사업자 또는 법인)	
	주소 (전화 :)			
인수협회				
신청사유				
건설기술 경력증 미반납 사유				

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· 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경력관리수탁기관이 변경되어 신고 자료의 이관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본인) (서명 또는 인)

○○○○○ 협회장 귀하

첨부서류	건설기술경력증(해당자에 한합니다)	수수료
		없음

유의사항			
1. 인수협회는 신청인의 이직 등으로 경력관리수탁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새로이 경력을 관리할 협회의 명칭을 기재합니다.(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11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· 고시한 기관 중 어느 하나여만 합니다)			
2. 신청사유는 이직 · 소속회사의 건설업 관련 면허 취득 등의 사유로 경력관리수탁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.			
3. 대리인 신청 시 신고인의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.			
4. 대리인 · 우편 또는 FAX로 이관을 신청하는 경우 이관하는 건설기술인(신청인)의 신분증(사본포함)을 제시하여야 합니다.			
대리신청인	성명 (서명 또는 인)	생년월일	연락처